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 - 166 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	㈜한국교통자산운용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등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 ㈜한국교통자산운용에 과태료 653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㈜한국교통자산운용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 A에 x회에 걸쳐 총 ○원을 대여하였고, 20xx.xx.xx.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○원을 대여하였으며,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C에 x회에 걸쳐 총 ○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 제2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항